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6. 5. 1.  
제249회 임시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4. 2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 연 창)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 사용의무화가 자율로 정하  
도록 하고 있고,
-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현행 교육여건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  
으로 거듭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명칭변경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 다른 조례의 개정(명칭변경)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현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시대흐름에 걸맞게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 자율화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개정명은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원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음.
- 사실 지난 '97년부터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통합되었음에도 획일화된 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참신한 이미지 보다는 폐쇄적인 이미지가 짙고 또한 다소간의 도민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왔음.
- 이에 교육원에서는 2005년 12월 명칭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 공모와 선별, 설문투표 등을 통해 개정명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결정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개정 명칭이 확정될 경우 각종 교통시설물 표기 수정 등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개략적인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 사업기간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의 절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제18조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제19조중 “교육원장”을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0조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②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30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2호 위임대상기관란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중 “교육원장”을 각각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별표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연 수 원 사 용 료

시설명 및 사용구분		시설규모	사용료	비 고
생 활 관	○ 공무원교육관	100실	5,000원	○ 1인 1박 기준
	○ 도민교육관	21실	3,000원	
대 강 당	○ 동절기	200석	150,000원	○ 1일 8시간 기준 ※ 1일 4시간이하 사용시 -동절기 : 100,000원 -하절기 : 70,000원
	○ 하절기		100,000원	
강 의 실	○ 50석 이상	4실	50,000원	○ 1일사용 기준
	○ 50석 미만	3실	30,000원	○ 1일사용 기준
전산실습실		50석, 2실	100,000원	○ 1일사용 기준
분임토의실		8실	20,000원	○ 1일사용 기준
어 학 실		1실	65,000원	○ 1일사용 기준
운 동 장		1면	70,000원	○ 1일사용 기준
테니스장		2면	20,000원	○ 1일사용 기준

※ 하절기 : 6월 ~ 10월, 동절기 : 11월 ~ 5월

(별지 제1호 서식)

## 사 용 신 청 서

결재	담당	과장	원장
협 조 : 총무담당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 여: )	사용기간	2006년 월 일 시부터 2006년 월 일 시까지 ( 일 박 일 )		
사용시설	○ 대강당 실실 ○ 강의실 실실 ○ 분임토의실 실실 ○ 전산실습실 실실 ○ 생활관 ○ 운동장 ○ 어학실 ○ 테니스장 면				
사 용 료	사용금액		송금계좌		
위와 같이 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 (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결 재	담 당	과 장	원 장
협 조 :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변경·중단사유					
사용인원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시설	○ 대강당 실 (공무원교육관, 도민교육관) ○ 강의실 실 (50석이상 : 실, 50석미만 : 실) ○ 분임토의실 실 ○ 전산실습실 실 ○ 어학실 ○ 생활관 실 (공무원교육관 실, 도민교육관 실) ○ 운동장 ○ 테니스장 면				
사 용 료	사용금액	원	송금계좌		
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 (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p> <p>제17조(설치)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제18조(원장)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9조(소관사무)교육원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 3. (생략)</p> <p>제20조(운영)교육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절 충청북도자치연수원</p> <p>제 17 조 ( 설 치 ) ① ..... .....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②연수원.....</p> <p>제18조(원장)연수원..... ..... .....</p> <p>제19조(소관사무)연수원장..... 1. ~ 3. (현행과 같음)</p> <p>제20조(운영)연수원..... .....</p>

##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교육사회위원회 가. (생략) 나.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사항 다. (생략) 4.~5.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치연수원..... ..... 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조(권한위임사항)①~③ (생략)</p> <p>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u>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 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u>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p> <p>⑤~⑥ (생략)</p> <p>제5조(위임처리 금지)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u>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u>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p>	<p>제2조(권한위임사항)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자치연수원장</u>..... .....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임처리 금지)..... ..... .....<u>자치연수원장</u>..... ..... ..... ..... ..... .....</p>																																				
<p>[별표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table border="1" data-bbox="172 1541 769 1832"> <thead> <tr> <th>대상실과</th> <th>일련번호</th> <th>사무명</th> <th>위임대상기관</th> <th>근거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총무과</td> <td>1</td> <td>(생략)</td> <td></td> <td></td> </tr> <tr> <td>2</td> <td>(생략)</td> <td><u>지방공무원교육원장</u></td> <td></td> </tr> <tr> <td>3~10</td> <td>(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생략)			2	(생략)	<u>지방공무원교육원장</u>		3~10	(생략)			<p>[별표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table border="1" data-bbox="805 1541 1407 1832"> <thead> <tr> <th>대상실과</th> <th>일련번호</th> <th>사무명</th> <th>위임대상기관</th> <th>근거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총무과</td> <td>1</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2</td> <td>(현행과 같음)</td> <td><u>자치연수원장</u></td> <td></td> </tr> <tr> <td>3~10</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자치연수원장</u>		3~10	(현행과 같음)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생략)																																			
	2	(생략)	<u>지방공무원교육원장</u>																																		
	3~10	(생략)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자치연수원장</u>																																		
	3~10	(현행과 같음)																																			

##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현행	개정안
<p>제명 : <u>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사용료징수조례</u></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u>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범위)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u>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등</u></p> <p>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①<u>교육원</u>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u>교육원 사용신청서</u>를 <u>교육원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u>교육원장</u>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u>교육원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u>교육원장</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생략)</p>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등)<u>교육원장</u>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3. 기타 <u>교육원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p>	<p>제명 : <u>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u></p> <p>제1 조(목적)..... .....<u>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u>.....</p> <p>제2조(사용범위)..... 1.~2. (현행과 같음) 3. <u>연수원장</u>.....</p> <p>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①<u>연수원</u>..... .....<u>연수원</u>.....<u>연수원장</u>..... ② <u>연수원장</u>..... ..... ③ ..... .....<u>연수원장</u>.....</p> <p>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u>연수원장</u>..... ..... 1.~4.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허가의 취소등)<u>연수원장</u>..... ..... 1.~2. (현행과 같음) 3. ....<u>연수원장</u>.....</p>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용료)①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7조(사용료 감면)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기타 <u>교육원장</u>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p> <p>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u>교육원장</u>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6조(사용료)①<u>연수원장</u>.....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료 감면)<u>연수원장</u>..... ..... 1. (현행과 같음) 2. ... <u>연수원장</u>..... .....</p> <p>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u>연수원장</u>..... ..... ②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1. ~ 4.(생략)

5. "직속기관"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제12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 교육원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 사무와 하부 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